

수원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746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김영보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변 론 종 결 2021. 3. 31.

판 결 선 고 2021. 4. 28.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6. 9. 선고 2019가단225117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의 “피고에게” 다음에 “채권최고액을 1억 4,400만 원으로 정한”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질권을 설정하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동일한 채권에 관한 F은행의 가압류결정문이 2016. 3. 25.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질권으로 F은행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채권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와 C은 2016. 3. 2. 함께 작성한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질권설정승낙서를 교부받았는바, 위 질권설정계약서와 질권설정승낙서는 같은 날 같은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연속성 있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압류채권자인 F은행보다 우선하여 민법 제349조 제1항, 제450조 제2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

2) 설령 피고가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50조의 전체적인 해석상 피고는 F은행을 상대로 대항하지 못할 뿐 채무자인 원고를 상대로 대항할 수 있고, 계약법의 원리상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는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소멸되는 효과를 얻어 실질적 이득을 취득한 C이다.

3. 판단

가. 피고가 민법 제349조 제1항, 제450조 제2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1)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49조 제1항).

한편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 ‘확정일자’란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1)

등 법령에 의하여 확정일자로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과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가 2016. 3. 3. 공증인에 의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공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한 질권설정에 관한 승낙서에는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질권설정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2호증)는 질권설정자인 C과 질권자인

피고 사이에 질권설정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입질채권의 채무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질권설정을

승낙하기 위하여 작성한 질권설정승낙서(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와는 그 작성 주체나 목적이

상이하하여 양 문서의 일체성이나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 내용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질권의

설정에 관한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349조 제1항, 제450조 제2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질권의 실행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법률상 원인 유무에 관하여

1)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고(민법 제450조 제2항), 이종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 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는바(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질권설정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행의

가압류결정문이 원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위 가압류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함으로써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을 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는 F은행에게 이 사건

질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대항력을 갖춘 F은행에 대하여만 제3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에게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채무변제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또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급부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위 지급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귀속 및 범위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 참조). 또한,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뒤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8,000만 원 중 피고가 C에게 그대로 반환한 6,000만 원을 제외한 1억 2,000만 원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행의 가압류에 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입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2,000만 원을 피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2. 16. C를 상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패소할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8,000만 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지위에 있고

그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변제의 효력 또한 상실된다는 이유로 대출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05208호 사건), 2020. 3. 31.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피고는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다6042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등에서 실시한 법리2) 을 들면서 계약법의 원리상 임대차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법리와 관련된 사안은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음에도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입질채권을 추심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권자가 민법 제349조 제1항,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른 점, 이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원고가 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이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되거나 피고가 질권설정자인 C에게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④ 한편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최고액이 1억 4,4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는 C의 대출원금이 1억 2,000만 원, 질권설정액이 1억 4,400만 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입질채권의 추심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8,000만 원 중 자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6,000만 원을 그대로 C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6,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0.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욱, 판사 남기정, 판사 김태형

1) 제3조(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 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 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 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 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선 확정일자로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법리는 위 각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종합하여 실시한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의 법리로 보인다.